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박석 의원
- 나. 의안번호: 제1288호
- 다. 발의일자: 2023. 10. 10.
- 라. 회부일자: 2023. 10. 23.

### 2. 제 안 사 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2.12.27.)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sup>1)</sup>이 법제화됨('24.12.28. 시행)에 따라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조항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③ (생략) <신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1)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현재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재활용 폐기물을 비롯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음.

- 안 제3조제4항은 생활폐기물 중 관내 처리 비율('22년 30%)이 매우 낮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광역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관내/관외 처리현황>**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가정			사업장		
	계	관내	관외	소계	관내	관외	소계	관내	관외
2020년	2,540	603 (24%)	1,937 (76%)	2,010	564 (28%)	1,446 (72%)	530	39 (7%)	491 (93%)
2021년	2,471	723 (29%)	1,748 (71%)	1,945	659 (34%)	1,286 (66%)	526	64 (12%)	462 (88%)
2022년	2,495	743 (30%)	1,752 (70%)	1,910	685 (36%)	1,225 (64%)	585	58 (10%)	527 (90%)

- 안 제3조제5항은 시행 예정('24.12.28. 시행)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사무수행 주체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입법 형태로 판단되는바 이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1항>**

**제5조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